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 규정

제정일: 2006. 6. 1 개정일: 2011. 7. 29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공문서에 대한 총장의 결재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사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직위별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책임)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하을 가지며 책임을 진다.
- **제3조(내부위임)** 위임 전결권자는 단장, 부단장, 팀장으로 구분하며 내부 위임 전결은 [별표 1]과 같다.<개정 2011. 7. 29>
- **제4조(중요사항)** ① 이 규정에 규정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거나 구두 또는 문서로 총장의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.
 - ②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.
- **제5조(경미한 사항)**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뚜렷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 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.
- **제6조(보고)** 전결 처리한 사항이 정책 수행상 필요하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7조(협조)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어 협조를 요하는 사항은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- 제8조(전결권자의 부재) 전결권자가 부재중일 때는 그 전결권자의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1. 7. 29>

리이신디터	업 무 내 용	총장	전결권자		
단 위 업 무 명			단장	부단장	팀장
산학협력단 운영계획 수립	산학협력단 운영계획 수립	0			
제 위원회 운영	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 위촉 및 해촉 위원회 관련 일반적인 사항	0	0		
산학연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	제안(신청, 계획)서 제출 연구 계약 체결 연구비 청구 및 정산 연구(중간, 최종)보고서 제출 연구 계획 변경		0	0 0	
직원 인사 관리	직원(정규직) 채용 직원(비정규직) 채용 직원 퇴직 직원 승진 직원 연봉 책정 및 보수 책정 직원 근무 평가	0	0 0 0 0		
직원 복무 관리	근태 연가 및 휴가 국·내외 출장		0		0
산학협력단장 직인 관리	단장 직인 및 사용인감 관수				0
지식재산권의 관리	직무발명 신고, 승계 및 권리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식재산권 출원 위임 지식재산권 비용 지출		0		0
기술이전 및 사업화	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기술이전료 관 리		0		

단 위 업 무 명	업 무 내 용	추 기·	전결권자		-
7 11 H T 3	म । पा ठ	총장	단장	부단장	팀장
연구비 중앙관리	연구비 실행예산서 연구비 청구서 및 각종 신청서 연구비 지출 의뢰서/결의서 (500만원 이상) 연구비 지출 의뢰서/결의서 (500만원 이하)		0	0	0 0
교수 학술활동 지원	교수 학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교내학술연구비 지원 계획 및 선정 논문게재 지원 및 외부연구과제 신청경 비 지원 신청 논문게재 지원금 및 외부연구과제 신청경 비 지출 기타 학술활동 지원금 신청 기타 학술활동 지원금 지출	0		0	0 0
연구업적 관리	연구업적 자료 관리				0
연구지원 자료 발간 각종 통계 및 보고 연구소 운영지원	연구지원 자료 수집 및 관리 연구지원 편람집 발간 통계 자료 작성 및 보고 연구소 설립, 통합 및 폐지 연구소 평가 및 지원 기본 계획 연구소 평가 실시	0	0		0
산학협력단 예·결산 및 회계	자금예산서 및 결산서 일계표(대체결의서) 현금 및 제예금 관리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4대보험 신고 및 납부 발전기금보고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 관리	0	0		0 0 0 0
산학협력단 회계내 일반예산 운영	일반예산집행(200만원초과) 일반예산집행(200만원이하)		0	0	
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	문서보관 및 관리 사무분장 및 제반 행정서식 보관 제증명 발급				0 0

^{*} 위 표에서 "직원"이라 함은 "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"을 말한다.